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2026. 5.



□ 처분요구일람표

| | |
|----------------------------|----|
| 1. 채용규정 정비 소홀 (시정) | 1 |
| 2.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시정) | 3 |
| 3. 의료기기 구매할인 미흡 (주의) | 5 |
| 4. 면세사업자 계약금액 미조정 (주의) | 8 |
| 5.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11 |
| 6. 예산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주의) | 14 |
| 7. 마약류 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 18 |
| 8. 진료비 미수금 징수 관리 소홀 (시정) | 22 |
| 9. □□□□□□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 25 |
| 10. 소규모 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 29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규정 정비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37차례의 채용공고를 하여 직원 230명을 채용하였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및 ③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공고 내용에 시험 평가기준, 가점 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인사규정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채용을 일관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험 평가 및 가점 기준 등도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고시와 전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료원장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직원 채용과 관련된 시험요건, 시험방법, 시험 평가기준, 가점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원은 직원 채용을 총 137차례 실시하면서 공고내용에 ‘의사상자 등은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이 있음’이라고 명시는 하였으나 의사상자 중 누가 가산점 5% 또는 3%을 받는 지 등의 세부기준이 공고문을 포함하여 의료원 규정 및 채용 계획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채용 공고문에 ‘면접전형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 60점 미만을 받는 경우 과락’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면접점수 계산 시에는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 불합격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의료원 규정, 채용계획, 공고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가산점 부여 및 점수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 및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시험 방법 및 가산점 부여 기준 등 채용 관련 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채용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 채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징계와 관련하여 의료원 「인사규정」 등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②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강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 아니된다.

그런데 의료원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 강등 처분 기간 중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직에 준하는 제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2. 징계 기준 양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②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음주운전 및 성비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료원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의료원 「인사규정」을 점검한 결과 성비위(성폭력범죄 세부기준, 음란물 유포 처벌기준), 음주운전(자전거 등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은닉·방조 처벌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게 운영되어 징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강등, 성비위, 음주운전 등의 징계기준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기 구매할인 미흡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직접 수행하고 공개경쟁 계약 사무는 매년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이란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거래가 있는 날(의료기기가 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와 같이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거래금액 결제 조건에 따른 의료기기 비용할인

| 구 분 | 1개월 이내에 결제 | 2개월 이내에 결제 | 3개월 이내에 결제 |
|----------|------------|------------|------------|
| 거래금액 할인율 | 1.8% 이하 | 1.2% 이하 | 0.6% 이하 |

따라서 의료원은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적용을 검토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서 등에 할인 규정을 명시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등 의료기기 구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붙임]와 같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 등 77개, 4,995,058천 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의료기기 계약사무 위탁기관인 ☆☆☆☆☆☆을 통한 입찰공고 시에 공고내용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적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계약 시에도 관련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의료기기를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료원은 의료기기 구매 시 계약서 등에 할인규정을 반영하고 1개월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89,91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할인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의료기기 구매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면세사업자 계약금액 미조정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라 한다)는 ♡♡♡♡ 운영을 위하여 ♡♡♡♡
▲▲▲ 구매 계약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조달·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5, 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9)에 따르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1관. 4. 라.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면세업체와 계약체결 시에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 ▲▲▲▲ 구매’를 매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공고하면서 공고 내용에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는 명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

[표] 면세사업자 계약 및 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 계약명 | 계약기간 | 업체명 | 지출금액 | 부당지급 (부가가치세) |
|--------------|--------------------------------|----------|-------------|-----------------|
| 계 | | | 111,810,840 | 10,164,621 |
| ☞☞☞☞ ▲▲▲▲ 구매 | 2023. 10. 1 ~ 2024. 10. 31. | ◎◎◎◎◎◎◎◎ | 45,281,696 | 4,116,517 |
| ☞☞☞☞ ▲▲▲▲ 구매 | 2024. 11. 1 ~ 2025. 10. 31. | ◎◎◎◎◎◎◎◎ | 52,934,585 | 4,812,235 |
| ☞☞☞☞ ▲▲▲▲ 구매 | 2025. 11. 1. ~ 2026. 1. 31. | ▽▽▽▽▽▽ | 13,594,559 | 1,235,869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가 면세사업자인데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1,810,840원으로 계약체결 하였고 계약금액 그대로 대금 지급하여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164,621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를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를 포함한 일부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과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¹⁾를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표]와 같이 2024. 3. 27. ◇◇◇◇◇◇◇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 계 약 명 | 계약업체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 2024년 ◇◇◇◇◇ 근로용역 (◎◎보조 6명) | ◇◇◇◇◇◇◇◇◇ | 2024.03.27. | 2024. 4. 1. ~2024. 6. 30. | 68,814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보다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CC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예산 집행 부적정 |
| 소 관 청 | 공공의료과장,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 관 계 부 서 | ○○○○○ |
| 내 용 |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이하 ‘예산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예산지침 V.예산 집행기준, ②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예산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훈령’이라 한다)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훈령 [별표 2의2]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산지침 III.주요 항목별 예산 ②경비, (2) 복리후생비에는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나. 세부 집행 요령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초청장, 홍보 유인물, 상패 제작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의 구입은 해당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유의하여 집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목적과 직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기념품(특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행사운영비는 행사 지원에 소요 되는 항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복리후생비는 주민의 눈높이 내에서 관련 규정³⁾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 의료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50만 원 이상의 기념품 구입 지출 중 명단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내역(2건, 1,179,000원)과 제공일시 및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3)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은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 검진권,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 포함)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 격려품을 일괄 구입한 내역(1건, 2,500,000원)이 확인되었고,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가 아닌 직원가족 등의 병문안 격려품 구입을 [표 2]과 같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 원)

| 집행일자 | 집행항목 | 집행금액 | 부적정 사유 |
|------------|-----------------|-----------|---------------------------|
| 2024.02.27 | 기념품 제공(△△세트) | 585,000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
| 2024.05.27 | 기관방문 격려품 구입(◆◆) | 2,500,000 | 연내 방문예정인 기관에 대한 격려품 일괄 구입 |
| 2025.03.27 | 식사 제공 | 594,000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
| 합계 | | 3,679,000 |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업무추진비 병문안 격려품 집행 내역

(단위 : 원)

| 집행연도 | 지급대상 | 집행금액 | 지급품목 |
|-------|--------------|-----------|------------|
| 2023년 | 직원, 직원가족 | 324,000 | ◆◆◆◆ |
| 2024년 | 직원, 직원가족, 기타 | 1,478,500 | ◆◆◆◆, ♡♡♡♡ |
| 2025년 | 직원, 직원가족 | 376,500 | ◆◆◆◆ |
| 합계 | | 2,179,000 |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사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 의료원의 행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3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해 예산지침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순금배지(♡♡)를 지급(20명, 33,865,200원)해 왔으며, 일반 퇴직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20만원을 지급(7명, 1,400,000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소속 직원에 대해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해왔으며, 2023. 12. 06.에는 복리후생비로 개원 102주년 기념 직원복지용 명목으로 상품권 23,300,000원을 구입하

였고 그 지급배부 대장은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행사비,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였고,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 포함)이 관리대장을 통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아 분실 또는 사적 사용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원의 예산(안) 협의 시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합니다.
(기관경고)

③ 관련자 BBB, CC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약류 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마약류관리자)에 따라 소속 ♀♀ 3명을 마약류관리자⁴⁾로 지정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1.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소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의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병원 자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 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하고 마약류관리법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에서 정하는 마약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보조자를 정하여 일부 관리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표 1]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

-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보관, 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
 - 비상마약류의 보관·불출·재고관리·운반 등 업무보조
 - 유효기관경과,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보관관리 등 업무보조
 -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등
 -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관리) 등
-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일부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마약을 관리하는 각 병동(♡♡실, ♠♠실, ◆◆◆병동, ☆☆☆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자가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교육총괄부서인 ○○부에서 점검하는 전직원 대상 특성화 교육 및 법정필수교육 등의 관리로 대체하였으며, 마약류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부적정

마약류관리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 승인자 등은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2026. 3. 9. ~ 3. 13.) 중 의료원의 마약류 저장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마약류 보관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문이 열려 있어 마약류 보관 금고의 위치가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어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마약류 보관시설 설치 현황



마약류 설치시설 점검 당시(2026. 3. 16. 16:22) ◇◇◇◇ 병동

※ 자료 : 의료원 현장 확인(관련자 2인 이상 입회) 자료 재구성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 의료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와 같은 기간 동안의 해당 병동 근무상황부를 대조한 결과 4개 병동(♡♡실, ♠♠실, ◆◆◆◆병동, ☆☆☆실) 모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상 점검자와 해당 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점검자로 기재)이 [표 3]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3] 부서별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자 - 근무상황부 불일치 내역

(단위 : 건)

| 연도 | 부서 | 발견건수 | 비고 |
|-------|--------|------|------------|
| 2024년 | ◇◇◇◇병동 | 1 | 연차(휴가) 직원이 |

| 연도 | 부서 | 발견건수 | 비고 |
|-------|------|------|--------------------------|
| | △△실 | 2 |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점검자로 기재 |
| | ○○○실 | 6 | |
| | ▽▽실 | 1 | |
| 2025년 | ○○○실 | 2 | |
| | ▽▽실 | 2 | |
| 합 계 | | 14 |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시에는 실제 근무자가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진료비 미수금 징수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김천의료원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계규정 제86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법」 제163조에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규정 제92조에는 채권의 포기 또는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관은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불납한 경우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감사 대상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 의료원의 입원, 외래 등 의료수입 미수금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미납부자에게 전화상 납부 독촉 이외에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제소 등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등 진료비 미수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미수금의 징수·관리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과 관리 체계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 있다.

[표] 의료수입 미수금 현황(2023. 10월 ~ 2026. 1월)

(단위 : 건, 원)

| 구 분 | 합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건 수 | 6,109 | 389 | 1,904 | 3,368 | 448 |
| 금 액 | 187,837,296 | 14,718,580 | 40,525,136 | 115,268,820 (건보 및 기관 납입예정액 포함) | 17,324,760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결손의 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2호⁵⁾에 따라 결손 처리하고 있음에도 의료원 회계규정 제92조제2항은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회계규정으로 미수금 징수 관리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 ① 미수금 징수 관리의 적법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원 회계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 ② 진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전화상 납부 독촉 이외에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제소 등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5)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시설관리부에서는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 사업명 | 구 분 | 도급자 | 계약금액 (변경)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일 (예정일) | 비 고 |
|--------------------|------|------------------------------|--------------------------|------------|-------------|--------------|----------------|
| □□□□ □□ 증축공사 | 설계용역 | □□□□□□ ◇◇◇사무소 (대표 △△△) | 109,000 | 23. 6. 2. | 23. 6. 5. | 23. 7. 14. | |
| | 공사 | ◎◎◎◎ 주식회사 (대표 ☆☆☆) | 6,162,171 (6,402,209) | 23. 12. 6. | 23. 12. 13. | 25. 3. 31. | 건축 기계 설비 |
| | 감리용역 | ▽▽▽▽사무소 (대표 ▼▼▼) | 54,600 | 24. 1. 24. | 24. 2. 14. | 25. 3. 31. |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및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발주부서6)의

장은 추정금액⁷⁾ 5억 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기타 용역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및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경상북도 감사관)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약심사 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의뢰 전에 심사부서(경상북도 감사관)의 계약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원 ○○○○부에서는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의 도비 보조사업⁸⁾으로서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등 계약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사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하였다.

2. □□□□□ 준공 후 내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6) 도본청의 실·과 담당관, 도의 직속기관, 지역본부 및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시·군, 도 지방공기업, 도 출연기관

7)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관급자재 제외)+부가세

8) 예산비율 = 국 5 : 도비 5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 ○○○○부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25. 3. 31. “□□□□□□ 증축공사”를 준공한 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⁹⁾을 위하여 1~2층 △△ 벽체를 재시공¹⁰⁾하는 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시행하였다.

[표 2] 내부 리모델링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 사업명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계약일 | 공사기간 | 공사내용 | 비고 |
|------------------------|--------|-------|--------------|----------------------------------|---------------|----|
| 계 | 36,080 | | | | | |
| ♣♣♣♣♣♣♣♣ 인테리어공사 | 21,120 | ◆◆◆◆◆ | 2025. 4. 7. | 2025. 4. 7. ~ 2025. 5. 2. | △△ 벽체 마감공사 | 1층 |
| ♣♣♣♣♣♣♣♣ 로비 인테리어 공사 | 14,960 | ▽▽▽▽▽ | 2025. 4. 10. | 2025. 4. 10. ~ 2025. 5. 7. | | 2층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중복공사로 인한 사업비 36,08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9) 준공된 1~2층 로비 벽체 마감이 수도권외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단조롭다는 사유로 벽체 마감을 변경

10) 기존 : 포세린타일 벽체 마감 → 변경 : 포세린타일 마감 위에 마그네슘보드 벽체 추가

② 관련자 DDD은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규모 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시설관리부에서는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의료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르면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추정가격¹¹⁾이 2천만원 이하인

11)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등¹²⁾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¹³⁾에 일정기간(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9.745%¹⁴⁾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 공사계약 분리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에 따라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내용·발주 시기·장소 등이 유사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단일공사를 시기적 또는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아야 함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내용, 발주시기, 장소 등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 인테리어 공사” 등 6건의 공사를 분할한 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주)△△△ △△△(대표 ○○○) 등 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1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청년창업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

13) 나라장터(G2B)

14) 87.745% → 89.745%[2025. 7. 8.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추진하였다.

[표 1] 공사계약 분리발주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 사업명 | 계약방법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계약일 | 공사기간 |
|----|------------------------|-------|---------|------------------------|---------------|--------------------------------|
| 계 | 6건 | | 169,432 | | | |
| 1 | □□□□□□□□ 인테리어공사 | 1인 견적 | 21,120 | (주)♣♣♣♣♣♣ | 2025. 4. 7. | 2025. 4. 7. 2025. 5. 2. |
| 2 | ◇◇◇◇◇◇◇◇ △△ 인테리어 공사 | 1인 견적 | 14,960 | (주)◇◇◇◇ | 2025. 4. 10. | 2025. 4. 10. 2025. 5. 7. |
| 3 | ☆☆☆☆☆ ▽▽ 리모델링공사 | 1인 견적 | 53,000 | (주)◎◎◎◎◎◎◎◎ (장애인기업) | 2025. 8. 4. | 2025. 8. 6. 2025. 8. 23. |
| 4 | ☆☆☆☆☆ ▽▽ 바닥재 설치공사 | 1인 견적 | 16,552 | (주)▼▼▼▼ | 2025. 8. 19. | 2025. 8. 20. 2025. 9. 16. |
| 5 | ♡♡♡♡ ▽▽ 벽체 마감공사 | 1인 견적 | 49,000 | (주)●●●●●●●● (여성기업) | 2025. 11. 13. | 2025. 11. 14. 2025. 12. 10. |
| 6 | ♡♡♡♡ ▽▽ 바닥재 설치공사 | 1인 견적 | 14,800 | ♣♣♣♣♣♣ | 2025. 11. 28. | 2025. 11. 28. 2025. 12. 22.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수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나.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미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건설공사에,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¹⁵⁾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공사종류 | 구 분 | 대 상 액* | | | 비 고 | |
|--------|-----|--------|--------------|-------|-------|--------|
| |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 50억 이상 |
| | | | 요율 | 기초액 | | |
| 건축공사 | | 3.11% | 2.28% | 4,325 | 2.37% | |
| 토목공사 | | 3.15% | 2.53% | 3,300 | 2.60% | |
| 중건설공사 | | 3.64% | 3.05% | 2,975 | 3.11% | |
| 특수건설공사 | | 2.07% | 1.59% | 2,450 | 1.64% | |

* 대상액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¹⁶⁾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사회보험의 보험료 및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15)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 (재+직노) × 율 + 기초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과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에 작은 금액

16)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부분+간접공사비 부분)+폐기물 처리비

간접공사비 부분 : 직접공사비 × 요율(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 0.7, 신축 주택 0.3, 주택 외 건축 0.5, 전문 및 개보수 공사 0.3)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¹⁷⁾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노후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①, ③, ④번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미반영하였고, ①, ②, ④번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미반영하였으며, ①~④번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미반영하는 등 공사 원가계산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미반영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 사업명 | 계약 상대자 | 공사기간 | 미반영 항목 | 계약금액 | | 재산정 금액 | |
|----|-----------------------------|--------------------|------------------------------------|-----------------------------------|---------|-------|---------|-------|
| | | | | | 총금액 | 보험료 등 | 총금액 | 보험료 등 |
| 계 | 4건 | | | | 151,030 | 469 | 157,751 | 6,721 |
| 1 | 노후 관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 (주)ㄴㄴㄴㄴㄴ (여성기업) | 2025. 2. 17. ~ 2025. 3. 17. | - 사회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54,000 | - | 56,168 | 2,168 |
| 2 | □□□□□□ 3층 ▼▼ 무대 설치공사 | (주)○○○○○ | 2025. 2. 27. ~ 2025. 3. 26. | - 사회보험료 - 환경보전비 | 21,900 | 469 | 23,345 | 1,445 |
| 3 | □□□□□□ ☆☆☆☆☆ 공사 | ◆◆◆◆◆ | 2025. 5. 1. ~ 2025. 5. 19. | - 사회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21,670 | - | 22,523 | 853 |
| 4 | ♥♥♥♥♥ △△ 냉난방기 설치공사 | (주)◆◆◆◆◆ | 2025. 8. 20. ~ 2025. 10. 17. | - 사회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53,460 | - | 55,715 | 2,255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을 재산정하여 반영한 결과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17)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임의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경미한 건설공사¹⁸⁾ 제외)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¹⁹⁾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계약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시설관리부에서는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 □□□□ ☆☆☆☆☆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전문건설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래 [표 4]와 같이 무자격업체인 ◆◆ ◆◆(대표 ♀♀♀)와 2025. 5. 1.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18)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에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에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에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19)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표 4]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 사업명 | 계약금액 | 계약일 | 계약상대자 (보유업종) | 필요업종 |
|--------------------|--------|-------------|-----------------|-----------------------|
| □□□□□□ ☆☆☆☆☆ 공사 | 21,670 | 2025. 5. 1. | ◆◆◆◆ (해당없음)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적정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타 업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격이 없는 업체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DDD은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